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8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5일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수렴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로 주민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숙의공론장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등의 의견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숙의공론장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기본계획¹⁾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변경한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① 에너지 수

-
- 1)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나,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2)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급의 추이·전망에 관한 사항, ②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④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⑥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음.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7조제2항 각 호)]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은 변화하는 지역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현황 및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3)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부산의 경우 ▲[시민 의견 수렴]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역 실정과 주민 영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책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과 관련한 숙의공론장의 운영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라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⁴⁾ 관련 조례를 제정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숙의공론장 운영방식을 중앙정부의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해 시민 1천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청년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클린에너지 청년서포터즈) 등을 실시했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 실무단(위킹그룹), 수소산업 육성 실무단(위킹그룹) 등을 실시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출처: 환경포커스, “부산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단위 에너지기본계획인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최종 확정”, 2025.8. (<https://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71230>))

4) 한겨레,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수립 광주서도 첫걸음 내딛는다”, 2019.6.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6452.html)

5)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음.

특히 숙의공론장의 구성 방식, 참여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